

## 신산업

- 01 | 택배차 사고 · 고장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
- 02 | 인공지능 로봇 활용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 연료생산



2023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 택배차 사고·고장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

 추진부서 |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287

## 추진배경



- 영세 택배사업자는 운행하던 택배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날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음
  - 운행이 지연될 경우 계약 택배 물량의 변상 문제(식품 변질 등)가 발생하고, 차량 수리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집하 작업 문제로 거래처 단절도 우려
  - 용달 차량과 기사를 함께 빌리는 소위 '용차'는 가능하나, 이 경우 차량 임차료 외 기사 인건비까지 추가 지불해야 하므로, 영세한 택배 사업자에 부담이 됨.
- 결국 영세 택배사업자는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점검이나 수리 기간이 긴 고장에 대한 근본적 수리 등을 기피 하게 될 유인이 커, 차량 안전 문제 발생
  - 부천 소재 기업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택배차 사고·고장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 사업 모델을 구상하였으나, 관련 규제의 벽에 부딪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 [ 관련 규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시설·장비 및 영업점 요건이 엄격(예: 5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상 영업점 등)

## 개선내용



### 개선 전

영세 택배사업자는 운행하던 택배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날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부재

- 운행지연으로 인한 택배물량 변상, 수리기간 장기화 경우 거래처 단절 우려
- 대체 차량을 빌릴 경우 차량뿐 아니라 기사도 함께 고용하게 되어 비용부담 추가 발생



### 개선 후

택배차 사고·고장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 사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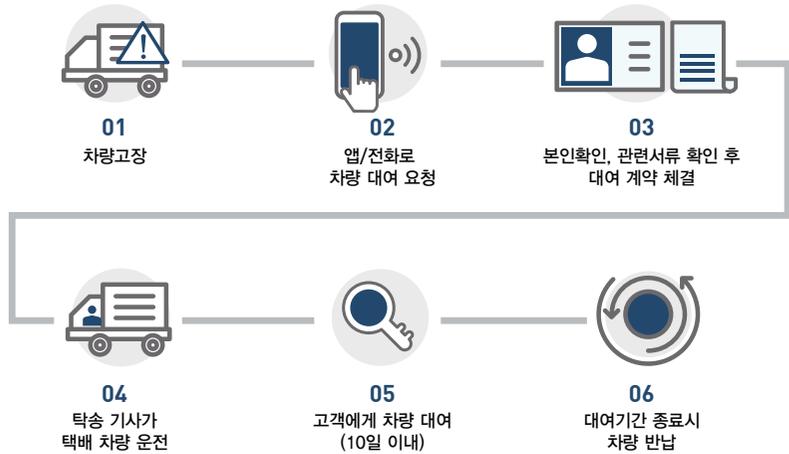
- 택배 차량이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예비차량(동급의 자가용 화물차량)을 단기간 대여하는 서비스 실증 특례 부여
- 기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 제한받던 사항 일시적 규제 완화

## 추진과정



해당 사업 모델은 경기도 컨설팅을 거쳐 제27차 신산업·신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지정되어, 서비스 개시

- 2021. 03. 11.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 2021. 04. 02.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기업 면담 실시
- 2023. 03. 11. ICT 규제실증특례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3. 04. 19. 제27차 신산업·서비스 심의위원회 실증특례 지정  
- (실증범위) 수도권 일대, 대여차량 30대  
(1차년도 10대, 2차년도 30대까지)
- 2023. 11. 29. 실증특례서비스 개시 통보(2023. 12. 01 ~ 2025. 11. 30.)



## 개선효과



- 차량 사고 또는 고장시 배달 지연으로 인한 영세 택배사업자의 피해를 방지
- 택배 사업자가 배송 지연 우려로 차량의 수리 및 점검을 기피 하는 문제 해결

# 인공지능 로봇 활용으로 페플라스틱 재활용·연료생산

 추진부서 |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287

## 개선배경



- 수원소재의 한 기업은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하여 투명페트병·페비닐 등 재활용 자원을 대량 분류<sup>1)</sup> 후, 수집된 페플라스틱을 열분해유 연료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하였음.
- 그러나 이는 기존과 양태가 다른 재활용 사업모델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모호하여, 사업의 진행 결정에 곤란을 겪고 있었음.
  - 기업은 해당 사업모델이 자칫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불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음.
    - \*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대상이 될 경우 별도의 압축·밀폐 차량 및 별도의 야적 시설, 폐기물 중간 처리 인력을 마련해야 하나, 해당기업의 경우
      - 로봇 내부에 고속압착기 장착/별도 박스로 운송 → 별도의 압축·밀폐차량이 불요
      - 열분해정제유 기업에 직접 납품 → 별도의 야적 시설, 폐기물 중간 처리 인력 불요
  - 수원 소재 기업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 개선내용



### 개선 전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열분해유 연료로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 그러나 기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불합리한 규제 발생 (필요치 않은 시설 및 설비를 마련해야 함)



### 개선 후

①경기도의 컨설팅,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 ③환경부의 적극해석을 통해 인공지능 로봇이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자원을 분류 후, 수집된 페플라스틱을 열분해유 연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업화가 가능해짐

1) 해당 기업의 분류 방식은 다중투입방식(예: 페트병 등 재활용품 묶음 투입)으로, 이는 기존의 단일투입방식(예: 페트병 1개씩 투입) 대비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 우수하며, 공동주택 등 재활용품 배출량이 많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 추진과정



2023. 03. 29.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2023. 04. 03.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기업 면담 실시

2023. 07. 07. ICT 규제실증특례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09. 26. 제30차 신산업·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회신

- 사업 추진 가능 : 적극해석<sup>2)</sup>

- (환경부) 수집·운반 하려는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병, 폐비닐은 폐포장재에 해당하므로 폐기물 처리 신고(폐기물관리법 제46조) 후 사업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 (신청 기업) 현 사업 단계상 폐기물의 분류 및 수집만 하는 것을 수용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성장 이끈다

## 개선효과



-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다중투입방식의 재활용자원 분류로 사용자 편의제고
- 수집된 폐기물을 열분해유 원료로 활용하여 자원 선순환, 탄소 배출량 저감

<sup>2)</sup> 적극해석은 개별법상 규제특례 부여 대상은 아니나, 적극적인 기업으로 해소를 목적으로 현행법령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 소관 부처에서 정책을 권고하거나 규제 없음을 확인하여 신청 기업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개시를 돕는 특례 방법